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7
----------	-----

제출년월일 : 2001. 10. 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처리 가능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수수료 납부에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 가능
(안제3조)

나. 수입증지 발행 기기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함(안제5조)

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규정 추가
(안제20조)

라.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21조)

마. 별지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함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5조제목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을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으로 하고, 제1항중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고 한다)에”를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고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에”로 하며
제2항중 “계기를”을 “계기 또는 발급기”로 하고 “계기의”를 “계기 또는 발급기의”로, “계기는”을 “계기 또는 발급기로”로, 제4호 “계기고유번호”를 “계기 또는 발급기의 고유번호”로 하며
제3항중 “계기의 관리책임자를”을 “계기 또는 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로 하고 “계기고유번호”를 “계기 또는 발급기의 고유번호”로 한다.

제20조중 “계기”를 “계기 또는 발급기”로 한다.

제21조제목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계기 또는 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으로 하고
제2항중 “계기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를 “계기 또는 발급기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로 하고
제3항중 “계기의”를 “계기 및 발급기의”로 하고 “계기상의”를 “계기 및 발급기상의”로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수입증지계기 관리대장)”을 “별지 제10호서식(수입증지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세 무 과 ☎ 940-4298
입 안 자	세 무 과 장	석 명 범
	세외수입담당	사 미 영
	담 당 자	권 상 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현금으로</u>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조(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u>수입증지 요금계기</u> (이하“계기”라고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u>계기의 사용인가</u> 를 받아야 하며, <u>계기</u> 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3호 <생략> 4. <u>계기고유번호</u> ③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u>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u> 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u>계기고유번호</u> , 발행일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판매인의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중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급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중지를 교부한다. 다만 <u>계기</u>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의 방법으로</u>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 <u>수입증지 요금계기</u> (이하“계기”라고 한다) 또는 <u>무인민원발급기</u> (이하 “발급기”라 한다)에 ----- ② <u>계기 또는 발급기</u> 를 ----- ----- <u>계기 또는 발급기의</u> ----- <u>계기 또는 발급기로</u> ----- 1~3호 <현행과 같음> 4. <u>계기 또는 발급기의 고유번호</u> ③ ----- ----- <u>계기 또는 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u> ----- <u>계기 또는 발급기의 고유번호</u> ----- ----- 제20조(판매인의 수수료) ----- ----- ----- ----- <u>계기 또는 발급기</u> ----- -----

현행	개정안
제21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생략> 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수입증지 계기 관리대장)을 별첨과 같이 한다.	제21조(계기 또는 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계기 또는 발급기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 ----- ③계기 및 발급기의 ----- ----- 계기 및 발급기상의 --- ----- 별지 제10호서식(수입증지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대장) -----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처리 가능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수수료 납부에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식 납부방법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수입증지 발행기기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함.(안 제5조)
- 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규정 추가.
(안 제20조)
- 라.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 마.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함.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8조 (수수료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수수료·과태료·과징금·법치금·벌금·과료등을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그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 제38조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부합(符合)되도록 동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

나. 내용타당성

- 관련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처리 가능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동 개정조례안 제3조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 및 제5조 수입증지 발행기기인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있어 동 기기의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